

이 보도자료는 2021. 1. 19.(화) 14:3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세현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1. 1. 19.(화)

제 목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처분 사건(제10조 제1항 제2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0조 제2항)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 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사건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 사건관계인의 실명 및 구체적인 지위 중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2조 제1항 제2호)
- ※ '19. 12. 9./ '21. 1. 18.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I 수사 개관

1. 수사착수 경위

- 세월호 사고는 2014. 4. 16.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학생 250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대규모 재난이자 참사였음
- 기존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 함) 조사, 후속 검찰 수사 등 여러 수사와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여론과 함께 언론, 시민단체, 유가족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던 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라고 함)의 임경빈 군 구조 지연 관련 수사 의뢰 등 여러 수사의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게 되었음

2. 수사 진행 내용

- 특별수사단은 지난 1년 2개월여에 걸쳐 ‘이번 수사가 세월호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이하 ‘대검’이라고 함),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압수하고, AIS 항적자료, 해군의 잠수 영상장치 등을 임의 제출 받아 분석하였음
- 또한, 청와대, 해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함),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라고 함), 법무부, 대검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음

II 수사 결과

1. 수사 대상 및 범위

- 수사단은 우선 기존 검찰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하였던 부분을 살피는 한편,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참위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사항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 유가족(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고소·고발 (11건)

- 해경지휘부 구조책임(3건) / 특조위 활동방해(2건) / 법무부의 수사외압 / 전원구조 오보 /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 감사원 감사외압 /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2건)

△ 사참위 수사의뢰 (8건)

- 임경빈 군 구조 지연 / DVR 조작 /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2건) / 진상규명국장 임명보류 등 특조위 활동방해 /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 해경 항공구조세력 구조실패 사건

- 이에 따라 수사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의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조작·은폐, 정보기관의 유가족 사찰 등 사건 유형별로 나누어 중요도를 감안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음
- 다만, 기존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상당부분 규명되었고, 그와 같은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아래와 같이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부분은 검토하였음)
- ※ 세월호 침몰 원인이 추가로 밝혀지더라도 동일인을 추가로 기소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상 불가능(일사부재리의 원칙)

2. 수사결과 요약

-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고 함) 등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혐의자들 총 20명을 기소하였음
-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하였음

| 유형 | 사건 요지 | 수사 단서 | 수사 결과 |
|-----------|------------------|------------------|----------------|
| 세월호 침몰 원인 | ①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 유가족 의혹제기 | ▶ 혐의 미확인 |
| 해경 구조 책임 | ②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등 | 유가족 고소 | ▶ 11명 불구속 기소 등 |
| | ③ 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의뢰 | ▶ 혐의 없음 |
| | ④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의뢰 | ▶ 혐의 없음 |

| | | | |
|----------------------|----------------------|---------------------|-----------------------|
| 진상 규명 방해 | ⑤ 특조위 활동 방해 |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의뢰 | ▶ 9명 불구속 기소 등 |
| | ⑥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 유가족 고소 | ▶ 혐의 없음 |
| | ⑦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 유가족 고소 | ▶ 혐의 없음 |
| 증거 조작 은폐 관련 | ⑧ DVR 조작 의혹 | 사참위 수사의뢰 | ▶ 처분 보류 (특검 인계 예정) |
| | ⑨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 사참위 수사의뢰 | ▶ 혐의 없음 |
| | ⑩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 유가족 고소 | ▶ 혐의 없음 |
| 정보 기관 사찰 | ⑪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의뢰 | ▶ 혐의 없음 |
| | ⑫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의뢰 | ▶ 혐의 없음 |
| | ⑬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 유가족 고소 | ▶ 혐의 없음 |
| 기타 | ⑭ 전원구조 오보 | 유가족 고소 | ▶ 혐의 없음 |
| | ⑮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 사참위 수사의뢰 | ▶ 혐의 없음 |
| | ⑯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 특조위 부위원장 고발 | ▶ 혐의 없음 |
| | ⑰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 유가족 고소 | ▶ 재배당 예정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 사건 요지 | 수사 결과 |
|--|--|
| 세월호 침몰 원인 관련 | |
| ①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 세월호의 침몰 원인 관련,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AIS 항적자료의 진위, 조작 여부 ※ 유가족 의혹제기 | - 해수부 제출 원본 AIS 및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 MADE SMART사의 AIS 등 데이터를 대상으로 항적과 AIS 원문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초기 해수부가 분석·발표한 항적이 7개 VTS의 23개 AIS기지국에서 확인되는 AIS 항적 및 원문과 일치하고, 민간에서 수집한 AIS 항적 및 원문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혐의 미확인) ※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해경의 구조책임 관련

②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 김석균(前 해양경찰청장),
김수현(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前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前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前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11명

※ 유가족 고소

-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최상환, 이춘재, A1○, B1○, C1○, D1○, E1○) 공동하여, '14. 4. 16.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하여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김문홍, F1○) 공모하여,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14. 5. 3.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문홍) '14. 5. 5.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해양경찰청 본청에 송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前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20. 2. 18. 불구속 기소
-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21. 2. 15. 판결 선고 예정)

□ 허위 기자회견 관련, 김문홍(前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석균(前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의사실 요지)

▶ '14. 4. 1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허위 기자회견을 하도록 직권남용 (수사 결과)

▶ 기자회견을 하였던 123정 정장 김경일은 세월호 사고 당일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초동조치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기자회견 이전에 퇴선방송 여부를 확인하는 본청 직원 등에게 퇴선방송을 실시했다고 허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기자회견에서도 '퇴선방송을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경 지휘부가 퇴선방송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기자회견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건 작성 관련, 이춘재(前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석균(前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의사실 요지)

▶ '14. 5. 30.경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출동한 123정이 퇴선방송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선방송을

하였다고 기재된 공문서인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허위
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수사 결과)

- ▶ 초동조치 문건은 본청에서 123정장 김경일로부터 '퇴선
방송을 실시했다'는 허위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내용에
따라 답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문건 작성에 참여한
상황구조반장 및 실무자들이 퇴선방송에 관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위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퇴선방송에 관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③ 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 김석균(前 해양경찰청장),
김수현(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前 목포해양경찰서장),
A2O(前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장)
등 4명
- '14. 4. 16. 17:24경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된 승객인 피해자 임경빈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병원 이송하지 않고 일반
함정으로 지연 이송하여 살인 또는
과실치사

[살인, 업무상과실치사]

※ 유가족 고소 / 사참위 수사의뢰

- 해경지휘부의 지시·승인에 따라 피해자가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병원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 피해자가 **약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발견
당시 해경 문자대화방(코스넷), 3009함 항박일지
에서 피해자를 '시신', '사체'로 지칭하고, '호흡,
맥박 및 동공 반응 없으나(입가 포말형성) 심폐소생술
지속 실시' 등으로 기재하는 등 생존 정황이 확인
되지 않는 점,
-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해경은 '**구조 당시 얼굴은
물 속에 잠겨 있었고,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응급구조사는 '**심폐
소생술시 몸속에 물이 있어 심장부위를 누를 때마다
물소리가 났다. 전신에 시반이 발생하여 이미 사망
하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면 심폐소생술을 그만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 심폐소생술 실시 중 바이탈사인(Vital Sign) 화면에
피해자의 맥박 48, 산소포화도 69%로 일시 나타난
부분 관련,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인위적인 혈액
박출과 이로 인한 말초 순환으로 맥박과 산소포화도
수치에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기관 회신결과 등을 종합하면,
- 피해자는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경지휘부가 임경빈 군이 살아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불만한 증거가 없음 (혐의없음)**

□ 3009함 헬기 착함과 피의자들의 과실 여부
(의혹 사항)

▶ 사고 당일 3009함 항박일지에는 ‘17:43 B515호 헬기 착함’, ‘17:44 B515호 헬기 서해지방해경청장 김수현을 태우고 이함’, ‘18:37 B517호 헬기 착함’, ‘18:40 임경빈군 P22정으로 이송’, ‘19:00 B517호 헬기 해경청장 김석균을 태우고 이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고, 유가족 등은 피해자가 3009함에 있는 동안 헬기가 착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헬기로 이송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

▶ 일부 언론에서는 임경빈 군이 3009함에 있는 동안 소방헬기가 착함하였음에도 그냥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

(수사 결과)

▶ 현장 채증 영상에 의하면 임경빈 군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이송하기 전 B517호 헬기는 착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응급구조사 진술도 일치하는바, 항박일지에 임경빈군을 P22정에 태운 시점과 B517호 헬기 착함의 선후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

▶ 당시 소방헬기를 부른 소방방재청 소속 응급구조사 및 소방헬기 조종사 조사 등 수사결과 소방헬기가 3009함에 착함한 사실이 없어 해당 의혹제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④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 A30(前 B703 초계기 기장), B30(前 B511 헬기 기장) 등 5명
- ‘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의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치사상 또는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 유가족 고소 / 사참위 수사의뢰

- 초계기 기장, 헬기 기장 등 피의자들이 눈에 보이는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구조 작업만 진행하였을 뿐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 피의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123정장이 현장지휘관(OSC)로 지정되어 있었고, 각급 구조본부 및 123정장이 항공구조세력을 지휘·감독하는 상황**이었으며, 피의자들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구조를 요청하는 승객들을 설 새 없이 구조하고 있었으므로, 피의자들에게 **지시·하달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도록 할 임무나 주의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진상규명 방해 관련

⑤ 특조위 활동 방해

- 이병기(前 대통령 비서실장),
- 현정택(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현기환(前 청와대 정무수석)
- 안중범(前 청와대 경제수석)
- 정진철(前 청와대 인사수석)
- 이근면(前 인사혁신처장)

- (이병기, 현정택, 현기환, 안중범, 정진철, 이근면, 김영석, 윤학배)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모하여, ‘15. 11.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케 하고,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

김영석(前 해수부 장관)
 윤학배(前 해수부 차관)
 조대환(前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
 ※ 유가족 고소 / 사참위 수사의뢰

- (이병기, 한정택, 현기환, 안종범, 김영석, 윤학배) 계속하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15. 1. 1.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16. 6. 파견공무원 복귀, '16년 하반기 예산 미집행 등을 실행함으로써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
 - (이병기, 한정택, 현기환, 안종범, 김영석, 윤학배) 공모하여, '15. 11.~'16. 1.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5명 여당추천위원 사퇴 방침을 정하였으나 부위원장 이현이 사퇴를 거부하고, 해수부차관 윤학배가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재차 거부하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직권면직 방안 검토,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추진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추진 및 문건 작성, 보고하도록 함
 - (조대환) '15. 1. 김영석과 공모하여,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복귀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김영석은 일방적으로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하여 특조위 설립준비행위를 방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前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하여 '20. 5. 28. 불구속 기소
 -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⑥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 우병우(前 민정비서관)
 황교안(前 법무부장관)
 - '14. 7.~10.경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직권남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유가족 고소

- (피의자 황교안)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법리검토와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었을 뿐,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제외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
- (피의자 우병우) 당시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123정장의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법무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법리에 충실하게 주의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나 대검 등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
- (구속영장청구서의 죄명 관련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당시 대검 형사2과장 등은 대검 형사1과장으로부터 '법무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구속영장

| | |
|--|---|
| | <p>청구서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빼고 청구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나, 법무부와 접촉한 대검 형사1과장은 법무부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과연 법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움</p> <p>-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의 의견 제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123정장 관련 보고를 하여 그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에서도 다각도의 법리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인 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있어 대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법무부에서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대검 및 광주지검 수사팀에서도 상당 정도 고려되었고 실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점,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혐의없음)</p> |
| <p>⑦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p> <p>-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 황찬현(前 감사원장)</p> <p>- '14. 6.~10.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를 중단시키거나 청와대 감사 결과를 최종 감사결과 발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p> <p>[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p> <p>※ 유가족 고소</p> | <p>- (인정되는 사실) '14. 5. 29. 청와대 실지감사 당일까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면을 제출받지 못한 채 감사를 종료한 사실, 보고관계 확인을 위한 8~9매 분량의 질의서에 대해 1매 분량의 답변서만을 회신 받고도 추가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14. 10. 최종 감사결과에 청와대 감사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p> <p>- (보고서면 미확보 관련) 청와대 실지감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고서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피감기관인 청와대의 협조 거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실지감사 실시</p> <p>- (질의서 부실답변 관련) 감사관들은 감사반 자체 판단에 따라 확보한 다른 자료를 통해 대통령 보고 관계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달리 추가답변 요구를 중단하고 감사를 종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 없음</p> |

- (청와대 감사결과 미포함 관련) 감사결과는 통상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감사결과 보고 대상을 결정하는데, 달리 위법·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의자들이 감사관들에게 청와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할 정도로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혐의없음)

□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임의로 축소되었다는 주장 관련

- ▶ 고소인 등은 감사원에서 2014. 7. 8.자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후 2014. 8.말경까지 보다 진전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진전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정부 및 대통령비서실 등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축소시켜 최종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익명의 사정당국 고위관계자 등의 진술, 前 민정수석 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제시
- ▶ 그러나, 익명의 사정당국 고위관계자의 진술은 언론 기사 상 주장으로 그 내용도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前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기재 부분만으로 피의자들이 감사결과를 축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감사원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확인한 각종 감사서류 검토결과, 정부 및 대통령비서실 등의 책임을 축소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증거 조작·은폐 관련

⑧ DVR 조작 의혹

- 성명불상(DVR 회수·관리자)
- '14. 4~6. 세월호 선장 등의 살인죄 등 사건,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증거인 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몰래 수거하여 CCTV 영상을 조작한 후 은닉하고, 세월호에 몰래 가져다 놓은 '별도 DVR'을 '원본 DVR'인 것처럼 인양하게 한 후 '원본 DVR'과 바꿔치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 사참위 수사의뢰

-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였음
- 다만,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단의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임

⑨ 청와대의 참사 인자전파시각 조작

-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 A4O(前 국가안보실 1차장), B4O(前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등 4명
 - 사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09:19 이전에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09:19 전파한 것임에도, '14. 7. '사고 당일 09:19경 YTN 뉴스를 통해 인지하고, 09:24경 전파했다'는 허위 문건을 작성, 국정감사 등에 제출하고 허위 증언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증]
- ※ 사참위 수사의뢰

- 위기관리센터 문자동보(동향보고) 발송기록 화면 캡처에 의하면 세월호 사고전파 관련 문자동보 발송 시각은 09:19로 확인됨에도, 국가안보실에서는 '09:19경 YTN 뉴스를 통해 인지하고, 09:24경 전파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기관리센터 행정관은 당시 국가안보실에서는 09:19경 뉴스를 통해 사고발생을 인지한 직후 해경에 연락하여 상황 파악하고, 문자동보를 발송했다고 진술하고, 해경 본청과 청와대의 통화 녹취록에서 09:22경 청와대가 해경을 통해 문자동보와 동일한 내용[08:58분 전남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 접수, 해경 확인 중]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진술에 부합하고,
- 문자동보 발송시각은 당시 문자동보시스템을 운용 하던 컴퓨터에 설정된 시각으로 대한민국 표준시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국가안보실이 09:19 이전에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⑩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 A5O(前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B5O(前 목포 122구조대장) 등 9명
 - '14. 4. 27.경 목포해경 122구조대의 최초 잠수시각을 약 1시간 앞당겨 허위 기재 및 보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 유가족 고소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등 각종 공문서에 목포해경 122구조대의 최초 잠수시각이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이른 시각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 목포 122구조대의 잠수시각을 허위 보고하라는 지시나 논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목포해양서 상황 보고서 등 다른 공문서에는 122구조대의 정확한 잠수시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의자들이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정보기관 사찰 관련

⑪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 박근혜(前 대통령),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 A6O(前 기무사 참모장) 등 18명
- '14. 4.~10.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 [박근혜, 김기춘 등 청와대, 국방부 소속 피의자들 관련]**
-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권리 행사방해, 업무방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유가족 고소 / 사참위 수사의뢰

- 피의자들이 제공받은 보고서에는 세월호 관련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들도 다수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이들에게 대면 보고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하여 구체적인 보고·지시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기무사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혐의없음)

[A60 등 기무사 소속 피의자들 관련]

- 기무사 참모장 A60 등이 故 이재수 사령관 등과 공모하여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되나,
- 직권남용 관련,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다거나, 획득한 유가족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유가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 업무방해 관련 동향 파악에 위력,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은 피의자들이 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주체가 되지 못함 (혐의없음)

⑫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 남재준·이병기(前 국정원장), 김수민(前 국정원 2차장), A70(前 국정원 직원), B70(前 국정원 직원), C70(前 국정원 직원), D70, E70(前 국정원 직원) 등 8명
- (A70) '14. 8.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하다가 입원한 유가족 F70의 건강상태, 주치의 G70의 정치적 성향, 성격, 업무능력 등을 수집, 관련 보고서 작성하여 F70·G70의 권리행사 방해, 개인·신용정보 불법 처리

[A70의 국정원법위반]

- 피의자가 F70(세월호 희생자 유가족)·G70(F70의 주치의)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 F70 건강상태는 주치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정보로서 이를 수집하는 행위를 두고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 F70·G70의 정보수집 과정에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다거나, 획득한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F70·G70를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F70·G70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 수사 초기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 사실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 (B7O) '14. 4.~11. 세월호 유가족 동향 등을 수집하여 유가족들의 권리행사 방해, 개인·신용정보 불법 처리
- (C7O) '14. 8. 세월호 유가족 F7O 관련 보고서 2건을 작성함으로써 F7O의 권리행사 방해, 개인·신용정보 불법 처리
- (D7O, E7O) '14. 5.~6. 여론조작 목적으로 영상물 3편을 인터넷에 배포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진실을 추구할 권리 등 권리행사 방해 등
- (남재준·이병기·김수민) 위 범행 지사승인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위반]

※ 유가족 고소 / 사찰위 수사의뢰

[B7O, C7O의 국정원법위반]

- B7O는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수색·구조 등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한 유가족 전반의 반응, 요청 내지 민원 사항 등을 파악하고, C7O는 F7O에 대한 보수권의 규탄시위 예정사항, 온라인 상 F7O에 대한 비난상황, F7O의 극단선택시 보수권의 의견 등 보수권의 동향을 파악한 것에 불과함
- 정보수집 과정에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다거나,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족들을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D7O, E7O의 국정원법위반]

- 국정원에서 세월호 관련 영상물 3편을 제작하여 국정원에서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배포하고, 피의자들이 이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 영상물의 내용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와 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으로 유가족들의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국정원에서 제작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남재준·이병기·김수민의 국정원법위반]

- 국정원 직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승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위와 같이 A7O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혐의없음)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신용정보법위반]

- 세월호 유가족 등의 일부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가 단순한 집합물을 넘어 개인정보파일로 볼 수 없고, 피의자들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혐의없음)
- 신용정보법위반은 5년의 공소시효 도과 (공소권 없음)

⑬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 성명불상(국정원 직원)
- '14. 4.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원 A8O를 조사하고, 이준석이 머문 해경의 주거지(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삭제하여 유가족들의 권리행사 방해

[세월호 선장 조사 등 관련]

- 세월호 선원 A8O가 처에게 "국정원 취조 받으러 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A8O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생각한 조사자는 해경이었고, A8O가 착각한 것이었으며, 관련자들은 일치하여 국정원 직원이 선원들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 '14. 4.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B8O 변호사로 하여금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원 C8O, D8O를 접견하여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수집된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여 유가족들의 권리행사 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 유가족 고소

-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함께 있었던 해경은 이준석이 해경의 집에 머물 당시 국정원 직원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CCTV에 불상의 국정원 직원이라고 주장되는 사람은 언론사 기자와 해경으로 국정원 직원이 아님

- CCTV는 이준석이 아파트를 떠난 이후 부분이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이준석이 머문 기간과는 무관하고, 고의적으로 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혐의없음)

[B8O 변호사 관련]

- B8O 변호사가 '14. 4. 21. 목포해경 민원실에서 이준석 등을 접견한 사실은 인정되나,
- B8O은 변호사로서 세월호 선장 등이 불이익한 일을 당할까 우려되어 접견하였고, 접견 직후 사고 원인과 관련되어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며,
- E8O 변호사와는 친분 관계가 없고, 국정원 2차장으로 내정될 것도 몰랐다고 진술
- 이준석, C8O, D8O의 조사 내용에도 B8O 변호사로부터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진술이 없는 등 피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음 (혐의없음)

기타

⑭ 전원구조 오보

- A9O(前 MBC 사장),
B9O(前 MBC 전국부장),
C9O(前 KBS 사장),
D9O(前 MBN 사장) 등 8명
- 세월호 승객 전원이 구조되지 않았음에도 '14. 4. 16. 11:01경부터 세월호 승객의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해경 및 민간 구조 세력의 구조업무를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수난 구호법위반]

※ 유가족 고소

- MBN이 11:01경, MBC가 11:01경, KBS가 11:26경 각각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 10:55경 단원고 학부모들 사이에 학생들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11:00경 단원고 측에서는 강당에서 전원구조 되었다고 발표
- MBN이 별다른 검증 없이 위 발표를 근거로 가장 먼저 전원구조 자막을 내보낸 이후 각 언론사들은 타 언론사의 보도, 언론보도를 인용한 경기교육청의 메시지 등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원구조 오보 양산
- 이후 MBC는 11:24경, MBN은 11:27경, KBS는 11:33경 각각 정정보도를 하여 오보 후 정정보도 까지 7~26분 상당 경과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 전원구조 오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고, 언론인들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들에게 전원구조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유포 또는 구조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혐의없음)

⑮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 A10(前 산업은행 영업부장) 등 산업은행 직원 4명,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해운 직원 1명
- (산업은행 등) '12. 5. 허위 감정 등 부실한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구입자금 100억원 대출하고, '13. 5.~11. 같은 방법으로 세월호 운영자금 195억원 대출하여 배임
- (청해진해운) '12. 11.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 편취

[특경법위반(배임, 사기)]

※ 사참위 수사의뢰

[산업은행의 부실대출 관련]

- 산업은행에서 영업부장 전결로 시설자금 100억원 및 운영자금 19.5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은 인정되나,
- (세월호 구입자금) 피의자들 공히 규정에 따라 대출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여신지침 등에 따라 전결권 범위가 결정되었고 수익성 평가에 근거하여 대출한도가 결정된 점, 피의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이상 본건 대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것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운영자금) 기업신용평가에서 비재무등급을 상향평가하여 의도적으로 전결권 범위를 영업부장으로 낮추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해진해운 선박의 담보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피의자들이 임무를 위배하여 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청해진해운의 대출금 편취 관련]

-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 본건 대출 이후에도 산업은행으로부터 19.5억원의 대출을 받은 점,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사 대표 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점 등을 종합하면,
- 피의자들이 하나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⑯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 이석태(前 특조위 위원장)
- '14. 12.경 '세월호특조위 사무처 설립 준비단 구성 운영계획(안)' 문건에서, 조직 명칭을 사무처 설립준비단에서 특조위 설립준비단으로 임의 변경 등

[사문서변조·행사]

※ 특조위 부위원장 조대환 고발

- 세월호진상규명법은 법 시행 전 '특조위 사무처'가 아닌 '특조위' 자체에 대한 설립준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
-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한 해수부 직원은 조대환이 조직명칭 변경 및 문건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 취지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취 조대환의 주장과 같이 이석태가 무단으로 조직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⑰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 A11(前 전경련 회장), B11(어버이연합 회장), C11(엄마부대봉사단 대표)

- 유가족 등이 고소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경련의 여러 보수단체의 지원행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이미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해당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인계(재배당) 할 예정

- 공모하여, 전경련 회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12. 1.~5. 어버이연합에 5억 2,300만원, '16. 1.~10. 엄마 부대봉사단에 5,000만원 각각 지급 [업무상배임]
※ 유가족 고소

4. 유가족·언론 등 의혹제기 사항 확인 결과

○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으나, 유가족 진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 되는 각종 의혹사항들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유가족 제기 주요 의혹사항

| 순번 | 의혹 사항 | 확인 결과 |
|----|--|--|
| 1 |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AIS 항적 자료의 진위, 조작 여부 |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중 ①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수사결과 참조 |
| 2 | DVR 수거과정 조작 및 CCTV 영상 편집/조작 여부 |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중 ⑧ DVR 조작 의혹 수사결과 참조(특검 인계 예정) |
| 3 | 해경 123정이 조타실과 기관실에 있는 선원들만 이른바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구조한 경위 | ▶ 123정장 및 탑승 해경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선박 전도로 인한 침몰 가능성을 보다 잘 알 수 있는 선원들이 먼저 선 밖으로 나와 구조를 요청한 상황에서, 123정의 미숙한 상황 판단 및 승객 퇴선 유도 소홀, 해양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 부재 등이 복합된 결과, 눈에 보이는 선원들만 우선적으로 구조하게 되고, 선내에 있던 승객들에 대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의도적으로 선원들만 구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 4 |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사고 후 9시 45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옷도 입지 못하고 급히 빠져 나왔던 것인지 당시 행적 확인 필요 | ▶ 선장 이준석은 사고 당시 옷을 갈아입던 중 사고가 발생해 넘어져 다친 사실이 병원 진료 차트에 의해 확인됨 ▶ 세월호 항해사들 진술에 의하면 이준석은 사고 직후 조타실에 임장은 하였으나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승객 구조를 위한 조치를 전혀 지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속옷 바람으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 밖으로 나가 해경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됨 |

| 순번 | 의혹 사항 | 확인 결과 |
|------|---|---|
| 5 | 세월호 여객부 사무장 사체 발견 당시 평소 착용하던 제복이 아닌 검정색 상·하 일체형 작업복(일명 '스즈키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경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명 '스즈키복'에 방수·방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침몰 상황 등에 대비하여 망인이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외의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음 |
| 6 | 임경빈 군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지연이송하게 한 해경지휘부의 구조책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중 ③ 故 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 방기 사건 수사결과 참조 |
| 7 | 참사 당일 오전에 소집한 청와대 NSC 관련 기록과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당일 행적 확인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당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08:00경 출근하여, 17:15경 대통령과 함께 중대본을 방문한 사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07:10경 출근한 후 09:19경 집무실에서 사고 최초 인지 후 10:00경 위기관리센터에 임장한 사실이 확인됨 ▶ 제10차 NSC 실무조정회의는 참사 당일 08:30경 ~ 09:30경 청와대 서별관에서 진행되었으나, 김기춘, 김장수는 참석하지 않았고,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 8 | 검찰수사 외압 의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중 ⑥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사건 수사결과 참조 |
| 9 |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중 ⑤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결과 참조 |
| 10-1 |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들 직접 심문 여부와 심문 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중 ⑬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사건 수사결과 참조 |
| 10-2 | 국정원이 세월호에 대해 보안측정 전 예비조사를 한 이유와 상호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원법 제3조, 보안업무규정 제35조, 제36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34조 등에 의거하여 2,000톤급 이상 여객선인 세월호는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측정을 받아야 함 ▶ 국정원은 세월호 보안측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준비 절차의 일환으로 세월호 보안측정 전 예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 10-3 |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상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은 화재, 폭파, 파손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시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순번 | 의혹 사항 | 확인 결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는 국가보호장비에 해당하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위 지침에 근거하여 '해양 사고 보고 계통도'의 통보 대상기관에 국정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14. 8. 검찰 수사에서 A호 선박 내 부착된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도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17. 8.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14. 4. 당시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여타 선박 9척의 비상 연락망에도 국정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
| 10-4 | 청해진해운 직원이 국정원에 세월호 사고를 보고한 경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업무규정,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 지침에 따라 청해진해운 직원과 국정원 보안 업무담당자 사이의 연락체계 유지 ▶ 청해진해운 직원은 정보기관이니까 같이 알고 있는게 좋겠다 싶어서 문자를 보냈을 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위 국정원 직원도 국정원 보안상황실 직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아 사고를 인지한 후에 위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문자가 와서 어떤 상황인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진술함 ▶ 결국 청해진 해운 직원이 평소 업무 협조 관계에 있던 국정원 직원에게 세월호 사고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됨 |
| 11 | 사참위 수사의뢰 사안 철저 수사 및 사참위와 실질적인 공조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참위와 정기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 협조하였고, ▶ 사참위 수사의뢰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해경 지휘부 사건, 특조위 활동방해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였고, 그 외 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였음 |
| 12 |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용역의 낙찰 과정, 비용의 추가지급 과정, 인양 공법 변경 과정 등에서 발생한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범행 의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양업체 평가과정의 적정성과 상하이셀비지 선정의 적정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음 ▶ 감사원 감사 결과 해수부가 세월호 추가 인양 비용 329억원의 지급을 결정한 근거와 지급 특약 체결 내용의 위법부당함이 확인되지 않음 ▶ 기타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 부족 |

○ 언론 등 기타 의혹사항

| 순번 | 의혹 사항 | 확인 결과 |
|----|--|--|
| 1 | 전남도지사 등을 태우기 위해 헬기 출동이 지연되었는데, 이들을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의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전남도지사 등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등에 해당하여 소방헬기를 타고 사고해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 광주지검은 '14. 5. 전남도지사 등이 구조헬기를 돌려세워 탑승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14.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와 같은 판단을 반복할 만한 사정변경은 확인되지 않음 |
| 2 | 현 정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세월호 문건을 파기하였는지, 파기하였다면 그 경위 확인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검찰에서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세월호 문건 파기 관련 혐의로 수사하였고, '20. 3. 파기 문건 불특정 등을 이유로 전부 혐의없음 처분 |
| 3 | 중대본의 368명 구조 오보 경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본은 '12:00경 진도군청 문화관광과장은 190명이 구조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190명이 목포 이송 중 회항하여 팽목항으로 이송중이라고 방송 → 12:00경 해남소방서 예방계장의 팽목항 현황판 기재 → 그 무렵 팽목항에 있던 전남지방경찰청 정보1계장의 팽목항 현황판 사진 촬영 → 전남지방경찰청 정보1계장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있던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에게로 전달 → 12:50경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이 위 사진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에게 보여줌 → 13:03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이 해양경찰청 본청 수상레저과장을 통해 해양경찰청 본청 경비안전국장에게 보고 → 13:12경 해양경찰청이 중대본에 기존 집계된 구조인원 178명에 190명을 더해 전달 → 14:00경 중대본이 구조인원 368명이라고 발표'의 과정을 통해 오보를 발표하였음 |

| 순번 | 의혹 사항 | 확인 결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오보는 보고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무렵까지의 구조자 숫자 178명과 해경으로부터 확인한 구조자 190명을 중복 산정한 결과로 추정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당일 B703호 초계기 부기장이 ‘대부분의 승객들이 구조된 상황’이라고 인터뷰한 경위 ▶ B703호 초계기 부기장과 KBS 기자와의 인터뷰 녹취록에 의하면 부기장이 ‘지금 현재 선체의 선수 부분, 조금만 지금 물 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은 현재 출동해 있는 함정, 그리고 지나가던 상선, 그리고 해군 함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수면 아래에 사람이 갇혀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됨 ▶ B703호 초계기 부기장이 KBS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시청자가 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부 지시나 고의로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 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div> |




향후 계획

1. 공판 활동에 주력 및 추가 의혹 계속 수사

-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前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유가족 고소·고발 사건, 사참위 수사의뢰 사건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임

2. 사참위 및 DVR 특검의 자료 제공 요청시 적극 협조

- 수사자료 등을 사참위 및 DVR 관련 특검에 제공하여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임 

■ 별첨 1 : 기존 검찰 수사 및 재판 경과

■ 별첨 2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경과

기존 검찰 수사 및 재판 경과

- 기존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여러 수사를 진행한 바 있음
- 검찰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2014. 4.~10. ①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④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 중 154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 이후 검찰은 2017. 10.~2018. 3.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혐의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2017. 12.~2018. 3.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前 해수부장관 등 2명을 구속 기소, 이병기 前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또한, 검찰과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018. 6.~12.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 지휘부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前 기무사 참모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대장 등 지휘부 3명을 구속 기소하였음(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은 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 이후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형이 선고되는 등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구조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었고, 일부 사건은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음

| 유형별 수사현황 | | 주요 수사·재판 결과 |
|---|-----------------------------|---|
| <p>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검경합수부, 광주지검 수사팀 `14. 4.~10.)</p> | <p>선장 등 세월호 선원의 구조의무 위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장, 선원 15명에 대해 살인·살인미수·유기치사상·특가법위반(도주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죄 등으로 구속 기소 ▶ (1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준석(선장) : 징역 30년 - 1등 항해사1 : 징역 20년 - 2등 항해사 : 징역 15년 - 3등 항해사, 조타수1 : 징역 10년 - 1등 항해사2 : 징역 7년 - 조타수2, 조타수3, 1등 기관사, 3등 기관사, 조기장, 조기수1, 조기수2, 조기수3 : 징역 5년 - 기관장 : 징역 30년 ※ 승객들의 사망·상해 관련, 이준석, 기관장 등에 대해 살인·살인미수죄 등으로 의율하여 기소 하였으나, 1심에서 기관장의 승무원(조리원) 2명에 대한 살인죄만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유기치사상죄로 유죄선고(살인·살인미수 등은 무죄) ▶ (항소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준석(선장) : 무기징역 - 1등 항해사1 : 징역 12년 - 2등 항해사 : 징역 7년 - 3등 항해사, 조타수1 : 징역 5년 - 1등 항해사2, 조기장 : 징역 1년 6월 - 조타수2, 조타수3 : 징역 2년 - 1등 기관사, 3등 기관사, 조기수1, 조기수2, 조기수3 : 징역 3년 - 기관장 : 징역 10년 ※ 2심에서 이준석에 대해서만 살인·살인미수죄가 인정되었고, 기관장 등은 유기치사상죄 등으로 유죄선고(살인·살인미수 무죄) ▶ (대법원) 항소심 판결 확정 |

| | |
|-------------------------------|---|
| <p>청해진해운 등의 세월호 불법 증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해진해운 대표 등 임직원 7명 기소 (5명 구속) - 대표이사 징역 7년 등 |
| <p>하역업체 부실고박, 운항관리자 부실 점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고박업체 관계자(2명), 운항관리자(2명) 구속 기소 - 화물고박업체 현장팀장 금고 2년 - 운항관리원 징역 3년 - 나머지 무죄 |
| <p>해경의 구조의무 위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 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죄로 불구속 기소 ▸ (1심) 징역 4년(업무상 과실로 56명 사망케 한 부분 유죄) ※ 일부무죄 : 업무상과실로 248명 사망, 142명 상해 부분 관련, 퇴선유도 조치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세월호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거나 탈출과정에서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항소심) 징역 3년(급변침 당시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1명 외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부 유죄) ※ 1심에서 부인된 퇴선유도 조치와 사망 및 상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대법원) 항소심 판결 확정 |
| <p>해경의 관제의무 위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VTS 센터장 등 13명 기소(5명 구속) - 벌금 200~300만원(직무유기 등 혐의는 무죄) |
| <p>해경, 언딘 유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차장 등 해경 3명 불구속 기소 - 수색구조과 해경: 징역 8월 - 나머지 해경 간부들에 대하여는 무죄 선고 ※ 대법원 재판 계속 중 |
| <p>구명뗏목 점검업체 비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설비업체 임직원 4명 기소 (3명 구속)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벌금 500만원 |
| <p>세월호 증톤 및 안전검사 부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체검사원 1명 구속 기소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 | |
|---|--|---|
| | <p>세월호 복선화 면허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승인 관련 문제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공여 청해진해운 前 상무 등 임직원 4명 기소 (2명 구속) ▸ 뇌물수수 인천항만청 관계자 2명 구속 기소 ▸ 뇌물수수 인천해경 관계자 2명 불구속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해진해운 임직원 징역 1년 6월 ~ 징역 8월 - 인천해경 관계자 징역 4월 등 - 인천항만청 관계자 2명 무죄 |
| <p>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검경합수부, `14. 4.~10.)</p> | <p>청해진해운, 계열사 자금 횡령, 배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등 계열사 임직원 14명 구속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병언 부인 :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 유병언 장남 : 징역 2년 등 ▸ 해외로 도피했던 유병언의 장녀는 징역 4년, 유병언의 금고지기는 징역 1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병언 차남은 현재 미국 도피 중 |
| | <p>유병언 일가 등 도피 사범 추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운 비호세력 15명 구속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신처 관리자 징역 6월, 집유 2년 등 |
| <p>청와대의 사고 인지 및 보고시각 조작, 대통령 훈령 변조 (서울중앙지검, `17. 10.~`18. 3.)</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위증죄로 불구속 기소 ▸ (1심, 항소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기춘 : 징역 1년, 집유 2년 - 김장수, 김관진은 각 무죄 ※ 대법원 재판 계속 중 |
| <p>특조위 활동방해 (서울동부지검, `17. 12.~`18. 3.)</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병기(前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 김영석(前 해수부장관) 등 2명 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 ▸ (1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병기 : 징역 1년, 집유 2년 - 안종범 : 무죄 - 조윤선 : 징역 1년, 집유 2년 - 김영석 : 징역 2년, 집유 3년 - 윤학배 :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소심) - 이병기, 안종범, 조윤선, 김영석은 각 무죄 - 윤학배 : 징역 6월, 집유 2년 ※ 바이버(Viber) 채팅방을 이용하여 해수부 소속 특조위 파견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조위 동향을 보고하게 한 직권남용죄만 유죄 ※ 대법원 재판 계속 중 |
| <p>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보통검찰부, `18. 6.~`18. 12.)</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 ▶ 前 기무사 1처장, 前 기무사 610 부대장, 前 기무사 310 부대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 ▶ (1심) - 1처장 : 징역 1년 6월 - 610 부대장 : 징역 1년 - 310 부대장 : 징역 1년, 집유 2년 ※ 참모장 1심, 1처장, 610 부대장, 310 부대장 2심 각 진행 중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경과

1. 주요 수사·공판 진행 경과

- '19. 11. 7.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성
 - ※ 단장 임관혁 등 검사 9명, 수사관 약 20명
- '19. 11. 14. 사참위, 임경빈 군 구조 방기 혐의 수사의뢰
- '19. 11. 15.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1차 고소장(총 5건) 접수
 - ※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언론사의 전원구조 오보, 법무부 등 수사외압, 전경련의 세월호 반대 단체 지원,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방해 사건 관련
- '19. 11. 17. 수사단, 목포신항의 세월호 선체 실황조사 및 검증 실시
- '19. 11. 18.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송받음
 - ※ 사참위는 '19. 10. 4. 대검에 산업은행 대출비리 사건 수사의뢰하여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
- '19. 11. 20.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DVR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단으로 재배당
 - ※ 사참위는 '19. 4. 24. 서울중앙지검에 DVR 조작 의혹 사건 수사의뢰
- '19. 11. 22. 해경 본청 등 압수수색(해경지휘부 구조 책임 등)
 - ※ 해양경찰청 본청(11. 22. ~ 12. 19.집행),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완도 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3009함, P112정, 목포한국병원, 소방청 본청 등 압수수색
- '19. 12. 12. ~ 13. / 12. 19. 감사원 압수수색(해경 감사 시 확보한 자료 등)
- '19. 12. 27.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2차 고소장(총 5건) 접수
 - ※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항공 구조세력 구조책임, 세월호 선원의 구조책임,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사건 관련
- '20. 1. 6.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하여 승객 303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등 6명

- '20. 1. 7. 세월호 유가족(임경빈 군 부모) 고소장 접수
 - ※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사건 관련
- '20. 1. 8. 법원,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각 구속영장 기각
 - ※ 기각 사유 :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고 발생 시기, 사고 이후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피의자들의 현재 신분이나 지위, 주거관계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 1. 9. 사참위,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수사의뢰
- '20. 2. 18. 해경 지휘부 등 11명 각 불구속 기소
 - ※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 '20. 2. 24. 세월호 유가족 고소장 접수
 - ※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사건 관련
- '20. 3. 2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의혹사항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접수
 - ※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DVR 조작, 법무부 등 수사외압,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방해 등 사건 관련
- '20. 4. 7. 前 특조위 부위원장 조대환의 고발장 접수
 - ※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사건 관련
- '20. 4. 7. ~ 4. 14. / 4. 29. / 6. 4. ~ 6. 5.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3회)

- (압수수색 대상 자료) 특조위 방해 사건,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과 관련된, 비서관 회의, 장·차관 회의, 국무회의 자료, 일일 동향 파악 및 업무보고 자료, 대통령 국정발언록 등 대통령과 피의자들의 지시사항, 발언내용, 보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록,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기간의 전체 지정기록물 목록 등
- (압수수색 자료 범위)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14. 11. 7. ~ '16. 9. 30.까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은 '14. 4. 16. ~ '14. 7. 31.까지 각각 생산·접수된 자료

- '20. 4. 22.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압수수색
 - ※ 특조위 방해 사건 관련
- '20. 4. 23. 사참위, 특조위 방해 추가 혐의 수사의뢰
- '20. 4. 27. 사참위,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 수사의뢰
- '20. 5. 4. 세월호 유가족 고소장(총 2건) 접수
 - ※ 전원구조 오보 사건 관련
- '20. 5. 14. 사참위,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과시각 조작 혐의 수사의뢰
- '20. 5. 28. 이병기 前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 각 불구속 기소
 - ※ 특조위 방해 사건 관련
- '20. 6. 18. ~ 6. 19.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 ※ 법무부 수사외압 사건 관련
- '20. 7. 1. 사참위,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혐의 수사의뢰
- '20. 7. 15.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3차 고소장 접수
 - ※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사건 관련
- '20. 8. 13. 국정원 압수수색영장 기각(국정원 사찰 사건 관련)
 - ※ 기각 사유 :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
- '20. 4. 20. ~ 현재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관련 공판준비기일 4회, 공판기일 6회 진행
 - ※ '21. 2. 15. 1심 선고 예정
- '20. 6. 30. ~ 현재 특조위 활동방해 관련 공판준비기일 3회, 공판기일 2회 진행

2. 사건 관계인 조사 등

- 유가족 등 조사
 - '19. 12. 27.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부터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취지 확인
 - '20. 9. 15. 국정원 사찰 대상자인 유가족을 상대로 피해 사실 확인
- 관련자 조사(서면조사 포함)
 - 청와대, 해경, 국정원, 국방부 등 각 부처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조사함

- 청와대 관계자 : 前 대통령 비서실장, 前 안보실장, 前 정책조정수석비서관, 前 정무수석비서관, 前 경제수석비서관, 前 경호실장, 前 민정비서관 등 18명 조사
- 해경 근무자 : 前 해양경찰청장, 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89명 조사
- 국정원 근무자 : 前 국정원장, 前 2차장, 前 정보관 등 9명 조사
- 국방부, 해군, 기무사 등 군 관련자 : 前 국방부장관, 前 기무사 과장, 前 해안구조전대 참수사 등 10명 조사
-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 前 법무부장관, 前 검찰국장, 前 광주지검장 등 9명 조사
- 감사원 관계자 : 前 감사원장, 前 과장 등 4명 조사
- 인사혁신처 관계자 : 前 인사혁신처장, 前 인사혁신처 차장 등 10명 조사
- 해수부 관계자 : 前 해수부장관, 前 해수부차관 등 8명 조사
- 청해진해운 관계자 : 前 세월호 선장, 前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8명 조사
- 세월호특조위 근무자 : 前 위원장, 前 부위원장 등 14명 조사
- 산업은행 관계자 : 前 부행장, 前 영업부장 등 8명 조사
-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소방청 등 관련 기관 인사 : 前 행정자치부 인사기획팀장, 前 소방청 헬기 조종사 등 14명 조사

3. 압수수색 등 관련 자료의 수집

○ 압수수색

- 해경, 감사원, 법무부, 대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디지털 자료와 모바일 분석
- 3회에 걸쳐 9일간 진행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국무회의 자료, 선임비서관회의 자료, 세월호 관련 자료 등 지정기록물 압수 및 분석

○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 해군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잠수 영상장치 2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잠수 영상을 복원하여 총 517개 298GB 상당의 동영상을 확인 및 분석

○ 해수부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해 정보 자료 분석

- 해수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원본 AIS 및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 MADE SMART사의 AIS 자료 등 분석

○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 확보

- 광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세월호 관련 사건 기록, 세월호 사고 관련 감사원 감사 기록, 해양심판원 세월호 특별조사 보고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보고서 등 관련 자료 확보

○ 그 외 '19. 11. ~ '20. 11. 청와대(국가위기관리센터), 사참위, 감사원, 국무조정실, 법무부, 해수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해양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응급의학회 및 산업은행 등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자료를 입수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문자동보시스템 관련 사항, 문자동보 발송기록 등
- 대통령기록관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발송한 문자동보 시스템 주소록, 청와대 출입 기록
- 사참위의 임경빈군 영상 원본, DVR 관련 범영상분석연구소 감정결과, 관련자 조사 자료 등
-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임경빈 군 생존 가능성 회신 결과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관련 적폐청산 TF 자료, 내부 규정 등
-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기무사령관 출입 내역, 국방부와 기무사 간 지시/보고 자료 등
- 해경의 현장지휘본부 생산 문서, 함정일지, 함정운영규칙 등
- 특조위 활동방해 관련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파견보류, 진상규명국장 임용보류 등 인사 관련 내역
-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강요 관련 법무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2대 이사장 임명 관련 자료 등
- 산업은행의 대출취급검토표 등